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48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2
2. 외부 회계감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8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안자: 신장식 의원 등 11인
2. 제안일: 2025. 12. 1.
3. 회부일: 2025.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Ⅲ. 검토의견

1.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9조(감독) ① ~ ⑥ (생략)	제169조(감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 ----- ----- ----- ----- ----- .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u>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⑧ (생략)	1. <u>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u> 2. <u>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u> 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300억원) 이상인 조합(전체 91개 중 89개)에 대하여,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받지 않은 회계연도에는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¹⁾

□ 외부 회계감사는 감사를 받는 조합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적인 제3자인 회계법인 등이 검증함으로써, 조합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회계감사는 통상 전기와 당기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해 자산·부채·손익의 변동, 재무구조 악화 여부, 이상 거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감사범위 및 감사결과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적의견 또는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²⁾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 수준을 외부에 공신력 있게 알리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함.

다만, 외부 회계감사가 일정 기간 간격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전년도 재무제표의 중요한 변동사항이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워 감사의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1) 현행 기준에 따른 2025년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조합 현황은 [참고 1] 참조

2)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작성된 의견, **한정적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실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

< 수협의 최근 5년간 외부 회계감사 수감 결과 >

(단위:개소)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회원조합 수		91	91	91	91	91
수감 대상		59	60	62	55	59
감사의견	적정	58	51	52	47	45
	한정	1	9	10	8	14
	거절	-	-	-	-	-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자산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회계정보의 연속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왜곡이나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최근 수협의 횡령·배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6건, 184억 4,5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연도별 사고액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외부 회계감사 강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수협 횡령·배임 사고 발생 현황('20~'25.11월)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1월	합 계
사고건수	7	7	3	4	10	6	36
사고액	2,028	3,438	399	2,778	4,021	5,781	18,445
평균 사고액	290	491	133	695	402	964	512

자료: 해양수산부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상호금융권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 업권에 비해 외부감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기관별로 규제 차이가 존재해 온 점을 고려하여,³⁾ 상호금융권의 외부감사 대상 요건과 감사 주기를 일원화하고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⁴⁾

< 상호금융기관별 외부 회계감사 기준 >

구 분	수협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총액	300억원	500억원	500억원	300억원	500억원	3,000억원
감사주기	2년	4년	2년	매년	2년	매년

자료: 해양수산부

3) 상호금융권 외부 회계감사 관련 법령 비교표는 [참고 2] 참조

4) 관계기관 합동,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2025.12.23.

□ 해양수산부는 금융사고를 예방하여 조합은 물론 조합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차단하고,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반면, 수협중앙회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비효율성과 비용 지출(평균 1,400만 원)에 따른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외부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12.19.)하여, 2026.1.20.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동 법률안과 유사한 취지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각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외부 회계감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1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0조(과태료) <신설>	제18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9조제7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조합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③ (생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신용협동조합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⁵⁾ 개정안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 역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422

5)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 고 1

2025년 외부 회계감사 수감대상 조합 현황

기 준	대상조합	조합수
계	62개 (중복제외)	
중앙회 정기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	강구, 강릉시, 거문도, 경남고성군, <u>경남정치망</u> , 경인 북부, 고흥군, 근해안강망, 근해유망, 김제, 남해군, 당진, <u>대형선망</u> , 동해시, 모슬포, 목포, 민물장어양식, 부경신항, 부산시, <u>부안</u> , 삼척, 삼천포, 서산, 성산포, 속초시, 신안군, 영광군, 영덕북부, 완도금일, 옥지, 울릉군, <u>인천</u> , 장흥군, 전남정치망, 제1·2구잠수기, 제3·4구잠수기, 제주도, 제주어류양식, 죽왕, 진도군, <u>추자도</u> , 통영, 포항, 하동군	44개
중앙회 정기감사를 받는 조합 중		28개 (중복 제외 시 18)
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 회계부정 등으로 지적 받은 경우	거제, 경주시, 고창군, <u>군산시</u> , 기장, 대형기선저인망, 멍게수하식, 보령, 서천군, <u>서천서부</u> , 여수, 울진죽변, 한림	13개
부실조합 및 부실 우려조합	<u>강구</u> , <u>거제</u> , <u>경남정치망</u> , 구룡포, <u>군산시</u> , 근해장어통발, <u>대형선망</u> , <u>부안</u> , 사천, 서귀포, <u>서천서부</u> , <u>인천</u> , 전남동부, 제1·2구잠수기, <u>추자도</u>	15개 (중복 제외 시 5개)

* 외부 회계감사 제외조합(2) : 대포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자산규모 미달)
자료: 해양수산부

참 고 2

상호금융권 외부 회계감사 관련 법령 비교

구분	법률	시행령
신협	제47조(회계 및 결산) ① ~ ④ (생략)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농협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수협	제169조(감독) ① ~ ⑥ (생략)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 300억원(2015회계연도까지는 3천억원)을 말한다.
산림조합	제12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생략) ②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2. (생략)
새마을금고	제76조(외부 감사) ① ~ ② (생략)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생략)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자료: 해양수산부